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9월 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삼성KODEX 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7.3.3

3. 정정 사유
- 설정단위 변경(100,000좌 → 50,000좌), 투자제한 조정

4.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		정 정 후		
요약정보						
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	-			업데이트		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			
4. 모집의 내용 및 절차	-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증권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, 법인투자자에 한해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설정 청구는 100,000좌 또는 그 정배수 단위로 가능)			-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증권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, 법인투자자에 한해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설정 청구는 50,000좌 또는 그 정배수 단위로 가능)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
2.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	(추 가)			변경시행일: 2026.9.16 변경사항: 설정단위 변경(100,000좌 → 50,000좌)		
5. 운용전문인력	-			업데이트		
8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대상	나 투자제한			나 투자제한		
	구분	투자제한의 내용	예외	구분	투자제한의 내용	예외
	파생상품 매매	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	파생상품 매매	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	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
	(추 가)			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	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 산 중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을 포함)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	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	가. 매입 (2) 지정참가회사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(투자신탁의 설정 청구) 3)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100,000좌 입니다. 따라서 수익자는 100,000좌 또는 그 정배수(200,000좌, 300,000좌 등)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.	가. 매입 (2) 지정참가회사또는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입(투자신탁의 설정 청구) 3)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,000좌 입니다. 따라서 수익자는 50,000좌 또는 그 정배수(100,000좌, 150,000좌 등)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